

#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

## 정관

제정	2010. 5. 18.
일부개정	2010. 11. 8.
일부개정	2017. 2. 28.
일부개정	2020. 6. 4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법인의 명칭은 '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'(영문으로는 'Kim Young Sam Center for Democracy', 이하 법인)로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법인은 대한민국 의회에서 9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과정과 문민정부 시대의 역사적 자산 및 자료 일체를 수집·연구·간행함과 동시에, 이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 및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·외의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김영삼 대통령의 사상과 민주화 업적 연구사업
2.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 건립
3. 김영삼 대통령 사료 수집 및 전집 발간
4. 문민정부 업적 평가 사업
5. 발표회, 세미나, 회지 발간 및 선양 사업
6. 기타 법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2장 회 원

**제5조(회원의 자격)**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 절

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-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6조(회원의 권리)**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-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**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**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-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- ④ 사망 회원은 회원명부에서 삭제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.

**제9조(회원의 징계)**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. 단, 제명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1.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2.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때
- 3.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

**제10조(징계의 종류)**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명
- 2. 자격정지
- 3. 경고

## 제3장 임 원

**제11조(임원)**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이사장 1인
- 2. 상임이사 1인
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
4. 감사 2인
-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

**제12조(상임이사)**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-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.
-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임기)**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이 생겨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선출을 통해 취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**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의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.
-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2. 임원 간의 분쟁 또는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

**제16조(임원선임의 제한)**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

한다.

**제17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 상황과 운영,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.

2. 제1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3.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총회,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18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19조(고문 등의 위촉)**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, 자문위원을 추대, 위촉하고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## 제4장 총 회

**제20조(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)**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를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2. 정관의 개정 및 법인 해산

3. 사업 계획의 승인

4. 예산, 결산의 승인

5.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

6. 기타 중요한 사항

**제21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연 2회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,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,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2.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이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3조(의결정족수)**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전항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개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의결 제척이유)**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25조(의사록)** ①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이 사 회

**제26조(이사회의 구성)**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27조(소집 및 특례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
④ 이사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집회하거나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⑥ 제5항의 경우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.

**제28조(의결정족수)**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9조(이사회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7. 재산 및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
8.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9. 기타 주요사항

**제30조(의사록)** ①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1조(재산의 분야)**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

과 같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**제32조(기본재산의 관리)**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33조(재원)**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의 회비
2. 후원회비
3.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
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5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6. 기타 사업 수입금 및 잡수입

**제34조(회계연도)**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35조(예산편성 및 결산)** ① 법인의 다음 해 사업 계획 및 세입,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**제36조(회계감사)** 감사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연도 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7조(임원의 보수)**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그리고 기타 이사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8조(차입금)** 법인이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39조(기부금의 공개)** 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## 제7장 조 직

- 제40조(사무처)** ① 법인의 운영 및 목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  
② 사무처에 사무 책임자 1명과 직원을 둔다.  
③ 사무처의 책임자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  
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- 제41조(후원회)** ① 법인 운영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8장 보 칙

**제42조(해산)**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.

**제43조(정관의 개정)**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4조(업무보고)**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, 보고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.

**제45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**제46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.

③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 법인 설립 시 선임된 이사 중 일부는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.

**제3조(설립자 기명날인)**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